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7
----------	------

2018년 4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4월 5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한강사업본부장 운영철)

가. 제안이유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여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안 별표2 제8호)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안 제17조제1항제10호, 별표3 제10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18.3.22.시행) 전기자전거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의 적정요금을 설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밖에,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별표 2 제8호)

- 서울함공원은 망원한강공원 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군함체험, 전시관람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에 개장하여 민간위탁 관리¹⁾ 형태로 운영 중인데,
- 현재 서울함공원의 이용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본 조례 제14조 제4항²⁾에 따라 시장방침인 「서울함 공원 운영계획」에서 입장료를 정하여 운영해 왔음.

1) 위탁업체 : (주)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3개 업체)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방법 : 예산지원형 위탁(소요예산 : 연간 5억 2천8백만원)

2) 제14조 제4항 :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1> 서울함공원 입장료 신설안

구분	현행 시장방침		신설안		비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	1,000원	700원	700~2,000원	500~1,500원	6~12세
청소년·군인	2,000원	1,400원	1,500~3,000원	1,00~2,000원	13~18세
성인	3,000원	2,000원	2,000~4,000원	1,500~3,000원	19세 이상

- 따라서 본 조례의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에 서울함공원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안 제17조 제1항 제10호, 별표 3 제10호)

- 현재 한강공원내에서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진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3.2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도로교통법(2018.3.27. 시행)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다만, 현재 자전거법에서 인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킬로미터,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에,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어야 하나, 실제로 가속기 조작으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전기 자전거를 개조하여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필요함.
- 덧붙여, 전기자전거 외관상으로 불법 개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2> 전기 자전거 유형

PAS 방식(출처 : electricbikereview.com)	스로틀 방식(출처 : endless-sphere.com)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구동되는 방식으로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가능함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따고 차도로 다녀야 함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⁴⁾에 따라 2회까지 연임 가능하지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 등에서는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도 연임 제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에 관한 조문 수정과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27
----------	------------

제안년월일 : 2018년 4월 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한강공원내 금지행위에 관한 조문 수정과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2. 주요 골자

- 전기자전거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0호)
-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22조제5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를 “차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행위는”을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으로 한다.

안 제22조제3항 중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안 별표 3 제10호의 금지행위란 중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를 “차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한 차
 례만 연임-----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65세 이상노인·다둥이”을 “65세 이상 노인·다둥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를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이유없이 주정”을 “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된 장소외에서”를 “이륜 이상의”로, “영업행위”를 “영업행위.”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행위는”을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제22조제3항 전단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8호에 서울함공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함 공원	어린이(6~12세)	700~2,000원
	청소년(13~18세)	1,500~3,000원
	성 인(19세 이상)	2,000~4,000원
	단 체(20인 이상)	
	- 어린이(6~12세)	500~1,500원
	- 청소년(13~18세)	1,000~2,000원
- 성 인(19세 이상)	1,500~3,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원칙)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u>수립, 시행하여야</u> 한다.</p> <p>제14조(이용료)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u>65세 이상노인 · 다둥이</u> 행복카드 소지자 · 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p> <p>3. ~ 4. (생 략)</p> <p>5.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u>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u>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p> <p>③ ~ ⑥ (생 략)</p> <p>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p>	<p>제4조(기본원칙)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수립 · 시행하여야</u> --.</p> <p>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65세 이상 노인 · 다둥이</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u>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금지행위) ① ----- -----</p>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 8. (생략)

9.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단서 신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 13. (생략)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
----- 주정-----

3. ~ 8. (현행과 같음)

9. 이론 이상의 -----
---- 영업행위.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

-- . -----

-----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

11. ~ 13. (현행과 같음)

14. -----
----- 아니하는 행위

15.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금지 위반

② (생략)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한다.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회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 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1명-----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 차례만 연임-----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 1. ~ 7. (생략)
- 8. 기타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영화촬영	(생략)	(생략)
녹화	(생략)	(생략)
거북선관람	(생략)	(생략)
잔디발행사	(생략)	(생략)
도로점용행사	(생략)	(생략)
입장권발매행사	(생략)	(생략)

----- 범위-----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 1. ~ 7. (생략)
- 8. 기타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영화촬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녹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북선관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잔디발행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점용행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입장권발매행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합 공원	<u>어린이(6~12세)</u>	<u>700~2,000원</u>
	<u>청소년(13~18세)</u>	<u>1,500~3,000원</u>
	<u>성인(19세이상)</u>	<u>2,000~4,000원</u>
	<u>단체(20인이상)</u>	
	- 어린이(6~12세)	500~1,500원
	- 청소년(13~18세)	1,000~2,000원
	- 성인(19세이상)	1,500~3,000원